

 신안산대학교	언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규정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3-1-15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18.02.08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24.3.20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책임부서/팀·계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입학학생처</td></tr> </table>	규정번호	3-1-15	제정일자	2018.02.08	개정일자	2024.3.20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규정번호	3-1-15									
제정일자	2018.02.08									
개정일자	2024.3.20									
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						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언론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방송국 및 학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비지원) 대학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에 시행되는 교육방송국 및 학보사 예산에 의한다.

제3조(경비지원 대상) ① 학보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한다.

1. 기자 활동비
2. 신춘문예 심사비 및 시상금
3. 학술대회 심사비, 논문지도비, 시상금
4. 기자교육 강사료
5. 학보원고료

② 교육방송국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원한다.

1. 교육방송국 국원 활동비
2. SAU Expo 가요제 심사비, 시상금

③ 기타 활동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지급기준) 교육방송국 및 학보사의 활동에 대한 경비 지급기준은 [별표] 교육방송국 및 학보사 경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.

부 칙

제7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7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7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교육방송국 및 학보사 경비 지급 기준

① 기자 및 국원 활동비 지급기준

학보사		교육방송국	
직책	지급금액	직책	지급금액
편집장	45,000원	국장	60,000원
부편집장	40,000원	총무	55,000원
총무	40,000원	차장	50,000원
정기자	35,000원	정국원	45,000원
수습기자	25,000원	수습국원	30,000원

② 심사비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금액	비고
교원 및 직원	100,000원 이내	교육방송국 가요제 학보사 신춘문예 및 학술대회
학생	30,000원 이내	

③ 논문 지도비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금액	비고
지도교수	1건 당 100,000원 이내	진행위원장은 미지급

④ 기자교육비 강사료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금액	비고
강사	50,000원	2시간 기준

⑤ 학보 및 교지 원고료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금액	비고
재학생	30,000원	
졸업생	50,000원	
번역	50,000원	
교원, 직원, 외부	100,000원	

⑥ 시상금은 행사 계획 수립 시 교육방송국 및 학보사 예산의 범위내에서

별도로 정함